『인권연구』 8(2): 199-232.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8(2): 199-232.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5.8.2.199

〔현장논단〕

“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한국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의 현실*

Abdul Qodos Nahid[1] · Aljubari Ashwaq Abdullah[2]
Ismail Mo · Sunny Mirae[3] · Klymovych Nadiia[4]
권 영 실[5] · 김 연 주[6] · 박 정 형[7] · 송 수 정[8]
안 지 영[9] · 이 성 환[10] · 박 상 희[11]

---

*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2025년 8월 19일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 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인도적 체류자의 현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현장논단은 증언대회 자료집을 기초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일부 저자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번역을 도와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1저자: 아프가니스탄 출신 대학생
2) 와하 대표
3) 키즈플러스 직원, 난민인권센터 자원활동가
4) 겨자풀 직원
5)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6)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7) 한국이주인권센터 센터장
8) 법학 박사, 한양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9) 피난처, 활동가
10) 겨자풀 대표
11) 교신저자: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학부 조교수, socialpark@skhu.ac.kr

www.kci.go.kr

ISSN 2635-4632

목 차

1. 머리말
2. 바꿀 수 없는 체류자격(학업과 정주의 벽)
3. 배제된 사회안전망(의료와 교육 차별)
4. 영원한 계약직 노동자(직업 선택의 제한)
5. 한국 난민들의 잊혀진 목소리(가족결합권의 부재)
6. 존엄성 경시와 불안정한 소속(인도적 체류자 통합 정책의 부족)
7. 맺음말 – 우리는 선언한다.

1. 머리말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난민인권네트워크, 2025), 2025년 6월 기준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총 2,016명이다. 이 중 10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은 583명이고, 5년 이상 10년 이하 체류한 사람은 1,225명으로, 대다수가 이미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난민법」 상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제2조 제3호)을 의미한다. 이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난민 인정 사유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마련한 보충적 보호 제도에 해당한다. 유엔난민기구 지침 제12호(UNHCR, 2016: para. 6, para. 9)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가 구상한 난민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www.kci.go.kr

지위로서, 실질적으로는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맥아담(McAdam, 2007; 200-201)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의 보호는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제적 보호를 의미할 뿐, 난민인정자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 난민협약(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1984년 카르타헤나 난민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과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호의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난민협약이 설정한 난민의 정의 자체를 확장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두 지위의 경계 역시 항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이러한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게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사회보장, 지역사회적응, 가족결합 등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다. 임시체류자격인 기타(G-1)을 부여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 건강보험의 경우, 차별적인 부과체계로 인해 오히려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많다. 즉, 한국 정부는 ‘체류만 허용’했을 뿐, 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영주 자격을 비롯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성장한 인도적 체류자 청소년들에게 깊은 좌절로 다가온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19년 실태조사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를 통해 39명의 인도적체류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2021b)는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www.kci.go.kr

개정을 추진할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난민법」에 따라 국내 체류가 허가된 인도적 체류자를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안정적 체류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21b: 17). 또한 2022년과 2023년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상한 2년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하여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그즈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서도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개편 계획이 명시되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76).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202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2025.5.9.)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 허가, 필수 의료 및 기초생활지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과 가족결합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CERD, 2025: para. 30). 또한 위원회는 인도적 체류자가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안정적인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CERD, 2025: paras. 41-42). 이는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우리는 2025년 세계인도주의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8월 19일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인도적 체류자의 현실》을 개최하였다(난민인권네트워크, 2025). 우리는 증언과 의견을 더 모아서, 학업과 정주의 벽, 의료와 교육 차별, 직업선택의 제한, 존엄성 경시와 불안정한 소속, 가족결합권의 부재,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 통합 정책의 부족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글로 정리했다. 인권·인권법 연구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화할 수 있게

www.kci.go.kr

되길 기대한다. 인도적 체류자의 현실은 이 논단에 적은 세부 주제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조항은 제39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하나의 조항뿐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기인한 수많은 주제에 관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말하고 인권·인권법 연구자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바꿀 수 없는 체류자격(학업과 정주의 벽)

1) 나히드(Abdul Qodos Nahid) 이야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서 열 살로 넘어가던 2012년,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프간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2008년에 먼저 한국으로 오셨고, 어머니와 네 남매는 4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마침내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과 나은 미래를 주고자 했고, 그 결정 속에서 우리는 한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2012년, 나는 한국으로 이주했고, 2025년인 지금은 이곳에서 13년째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모국인 아프간에서 보낸 시간보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졌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왔는데 고향을 아직도 기억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9년을 산 아프간과 13년을 산 한국은 환경이 너무 달라, 오히려 그 차이가 내 기억을 더 뚜렷하게 만든다.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떴다.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처음 비행기를 탈 수 있

www.kci.go.kr

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태어난 촌을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던 나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부모님과 네 남매가 작은 원룸에서 무더운 여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설렘은 금세 낯설고 힘겨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고국과 너무도 다른 한국에서의 적응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나는 늘 경직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의 힘과 변화

친구들과 학업 출발선이 달랐던 나는 9살에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가 보았다. 아프간에서는 집 앞에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 없었다. 어머니를 포함해 집안 대대로 여성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내가 유일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탈레반 통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교육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참여가 철저히 제한된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이후로 여성의 교육을 법으로 '불법화'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법적으로 여성은 6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공교육의 현장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지 4년이 되어 간다.[12)]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참 좋았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 법을 접하는 매 순간이 내게는 즐거운 배움이자 새로운 도전이었고, 학교에 가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었으며 더 넓은 세계를 알아갈 수 있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불안과 갈등에서 느낀 좌절을 오히려 깨달음과 배움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또

12) 유니세프에 따르면(UNICEF, 2025), 아프가니스탄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교육권을 박탈당한 여학생이 약 40만 명 증가해 총 220만 명이 되었다. 유니세프와 유네스코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UNICEF and UNESCO, 2025), 2022년 기준 10살 아동의 90% 이상이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없으며 학교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www.kci.go.kr

한 부모님보다 더 빨리 한국어를 습득한 결과, 나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 출입국·병원·고용노동부·인력사무소 등을 전전하며 부모님의 전속 통역사로 살아야 했다. 지금 돌아보면, 열한두 살 무렵 학업에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늘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부모님의 일 하나하나를 해결해 줄 때 느꼈던 성취감이 더 컸던 것 같다.

부모의 막막한 현실은 곧 나의 현실이었다. 부모가 안정을 느껴야 나도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일찍이 눈치챘다. 낯선 땅에서 부모님은 우리 남매만을 붙잡고 버티고 있다는 것, 옆에서 소통이 통하는 이도, 챙겨주는 이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런 우여곡절 많은 상황을 불평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학업과 목표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데에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선명히 상반되는 두 국가를 경험한 나는 자연스레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분명 아프간과 한국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회의 구조는 이렇게 다를까? 나는 두 나라를 역사적·정치적으로 비교하고, 국가의 역사와 수립, 정치적 배경, 국가 정책, 국제 분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혼자 고민하며 큰 질문들을 던지던 중 ‘역사학’과 ‘정치외교학’을 알게 되었고, 특히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며 이 두 학문을 반드시 공부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생겼다.

나는 전쟁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얻었다. 만약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나 역시 여느 아프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며,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바로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고국의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한국

www.kci.go.kr

에서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감과 조급함을 느낀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다. 나와 같이 외부에서 기회를 얻은 이들이 들어가 일으켜야 한다. 나는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아프가니스탄이 겪는 문제는 여성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속되는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빈곤, 인프라 부족은 국가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도 교육을 핵심으로 삼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열쇠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 안정과 법의 지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한국과 겹쳐 본다. 한국 또한 전쟁과 권위주의의 시대를 겪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나와 같은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서 살아온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한국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예시이자 훌륭한 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제2의 고향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태어난 아프가니스탄이 나의 어머니라면, 내가 자라온 대한민국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 안에서 '인도적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이다. 다시 말해, 정식 난민 지위(refugee status)는 아니지만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임시적 허가인 셈이다. 그러나 10여 년 가까이 이곳에서 임시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www.kci.go.kr

[그림 1] 외국인등록증

한국에서 태어난 남동생 둘도 예외가 없다. 서류상으로 나와 똑같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기타(G-1)’에 대해 어릴 때는 큰 생각이 없었다[그림 1]. 아버지가 기타로 분류되기에 미성년인 나도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또 학교와 집이 내 생활의 범위였고 내게 전 세계였다. 그러나 성년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과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지금 나의 비자, 체류자격이 크나 큰 걸림돌이 되고, 이 사회에 속할 수 있게 ‘소속감’을 내어주지 않는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단어 하나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분류되지 못한 존재, 어느 제도에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채 보호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이 ‘기타’라는 분류는 나로 하여금 살 수는 있지만 살아갈 수는 없는 자격 속에 머물게 하며, 지금껏 한국에서 자라온 시간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체류자격은
- 정규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제한되고,

www.kci.go.kr

- 영주권이나 귀화의 기회, 그에 이르는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으며,
- 매년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제도적 통로조차 닫혀 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마주한 구조적 과제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5%에 해당하고(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 2), OECD 기준으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었다(서울신문, 2023). 그러나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공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마주하면서도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와 같은 인도적 체류자에게 필요한 것은 혜택이나 특혜가 아니다. 단지 공정한 기회다. 제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정직하게 경쟁하고 평가받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더 이상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서 성숙해지는 길이자, 내가 이곳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길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박노해(2022) 작가 글 중,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의 한 구절을 공유해드리며, 긴 글을 읽어 주신 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도한다.

"춤추고 노래하고 꿈을 꾸고
밥을 벌고 책을 읽고 대화하고
탐험하고 도전하고 깨어지고
함께 앞을 보며 나아가라."

- 박노해(2022),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 중에서

www.kci.go.kr

2) 학업과 정주의 벽

인도적 체류자의 고등교육 접근의 어려움 및 진로의 벽

나히드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구조가 왜 이렇게 다른지 질문하고 그 해답을 역사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찾아간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모색한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 체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난민 청소년들은 난민신청자인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다. 한국 출생이든 중도입국 자녀이든 상관없이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들 역시 부모의 체류자격을 따라가거나, 그들 스스로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잘 못 느끼지만, 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약을 경험하고, 정주하는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인도적 체류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인정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처우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적 체류자 역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만, 정주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분류된다. 이곳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인도적 체류자 청소년들에게 이는 ‘미래에 대한 삶의 가능성’을 제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불가분의 인권이자 다른 모든 인권 실현의 토대로서 기능한다(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1999, para. 1).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권리는 여러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법적 지위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인도적 체류자가 비자의 변경 없이 고등교육 과정에 진

www.kci.go.kr

학할 수 있도록 지침상의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제약 속에서 고등교육 진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거나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인도적 체류자 학생들의 현실이다.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전형'을 마련해 놓았고, 이주배경 수험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전형의 서류 요건들은 유학생에게 맞추어진 경우가 많아, 실제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가 준비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실무현장에서의 지원 경험에 비추어보면, 학생들의 수험을 돕는 고등학교에서조차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인도적 체류자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대학 입학처도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상황에 맞춰 입학전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원기관이 직접 전화로 수험생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만, 요구 서류가 미비한 상황을 고려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유엔난민기구, 2025: 140). 이렇듯 인도적 체류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난민지원기관과 같은 지원 네트워크와 학교의 소통 역량으로 일부 실현된다는 점은 고등교육으로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입학 이후에도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분류되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에서 아무리 오래 거주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임시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 아르바이트, 취업 및 인턴십 기회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인도적 체류자(G-1-6) 학생들은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인정받아 일부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을 뿐, 졸업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없다.

www.kci.go.kr

인도적 체류자의 영주 자격 신청 제한

앞서 나히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미래를 위해 영주 자격을 얻어 꿈을 펼치고 싶어 하지만,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자 체류자격으로는 영주 자격(F-5)을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아무리 오랫동안 체류하였더라도,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고 해도 예외는 없다.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대표적으로 난민인정자 등에게 부여되는 거주(F-2)이다. 영주 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제10조의3 제2항 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동조 동항 제2호),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동조 동항 제3호)이 요구된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항).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4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는 영주 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범위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법령 준수,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자산 수준[1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혹은 성적을 고려한다. 설령 인도적

1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4 제1항 제2호는 해당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

체류자가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현행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나히드와 같은 인도적 체류자 청소년과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지만, 체류자격과 경제적 요건(중위소득 이상) 부분에서 제도적 제약이 큰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체류자격이 본국으로의 귀환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기타'(G-1)가 아닌 정주(거주) 체류자격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도적 체류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인도적 체류자들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배제된 사회안전망(의료와 교육 차별)

1) 알주바리 아슈왁(Aljubari Ashwaq Abdullah) 이야기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왔다. 자유로운 거주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틈새를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말이다. G-1 비자는 나에게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허가를 주었지만, 진정한 삶의 존엄성은 주지 못했다. 그것은 기다림과 불확실성,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위해 숨을 참는 삶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한국에서의 삶을 바꿀 새로운 법이 발표되기를 바란다. 쫓겨날까 봐 두렵다. 매 순간, 매시간, 매일, 매달, 그 모든 시간을 세어본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때 살았던 삶을 떠올리며 눈물을 깜빡였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의 아버지들은 매일 버스비를 낼 수 없어 지친 눈으로 먼 길을 걸어 집을 나선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서툰 한국어로 일자리가

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www.kci.go.kr

있냐고, 아예 없냐고 묻지만, 대답은 정중한 거절이나 멍한 눈빛으로 돌아올 뿐이다. 일자리를 구한 날들은 밤늦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재킷에는 땀과 비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는 생활비를 내고, 모든 규칙을 따르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조용히 기여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가진 것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다.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존엄하게 살 권리, 착취 없이 일할 권리, 걱정 없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권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G-1 비자로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이다. 적절한 건강보험이 없다면, 단순한 열병조차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병원에서는 일반 진료비의 세 배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비자 상태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의료 도움 없이 집에서 회복하도록 한다. 약과 식료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아는 또 다른 오르기 힘든 산이다. 공립 어린이집은 종종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힘겨운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 고립된다. 사립 어린이집은 한 달치 월세보다 더 비싸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이다.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공간 없이 자라며,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끊임없는 걱정과 희생이 드리운 그림자 안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가장자리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싶어 하는 가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가 아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마땅히 들려질 자격이 있다.

www.kci.go.kr

2) 의료와 교육 차별

알주바리 아슈왁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허가일 뿐 삶의 존엄성을 주지 못한다”고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체류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불안정 노동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의료와 교육 차별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배제와 차별이다. 이 절은 의료와 교육 차별에 집중하고자 한다. 앞서 나히드는 고등교육 제도의 차별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교육과 양육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의 보건·의료 및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준하는’ 국제적 보호의 대상자로서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지만(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17), 보건·의료 및 교육에 관한 권리는 난민신청자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2013)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초 이러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국가인권위원회, 2015), 2018년 6월에 이르러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대한 의무가입자가 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그러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 세대원 등록 제한, 가족관계 증명 곤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체류연장 제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과 통역 서비스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인도적 체

www.kci.go.kr

류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은 여전히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59-68).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인도적 체류자의 고등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별도 세대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사회권규약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85038 판결).

알주바리 아슈왁과 나히드의 말대로, 인도적 체류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도적 체류자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은 체류자격, 보호자의 경제력,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인도적 체류자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유엔난민기구, 2025: 141-142). 특히, ‘무상 초등의무 교육’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체약국이 이를 확보하여야 할 명백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하지만 이러한 의무교육 이전 단계의 교육 활동은 부모의 경제력과 체류자격에 크게 좌우되어, 외부의 지원 없이는 접근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유엔난민기구, 2025: 137).

더욱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양육 지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난민인정자 아동은 포함되지만 인도적 체류 아동은 배제된다.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인도적 체류자 아동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 연령과 금액 등에서 국민에 대한 지원과 달리 제한을 두는 등 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인도적 체류자들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www.kci.go.kr

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보육기관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2025년에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유엔난민기구, 2025: 189-190)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 부모가 생계유지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족 돌봄의 주체로 기능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교육, 발달,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자 아동 및 청소년은 제도가 지향하는 아동복지의 규범적 이상으로부터 방치된 상황이다.

4. 영원한 계약직 노동자(직업 선택의 제한)

1) 나디아(Klymovych Nadiia) 이야기

나는 인도적 체류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번 받고 있다. 비자 갱신 비용은 60,000원이고, 취업허가 비용은 120,000원이다.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매번 고용계약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의 각종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만원의 취업허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금액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취업허가가 없으면, 카페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는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다. 아무 직업이나 선택할 수 없다. 금지 직종과 허용 직종이 나뉘어 있고,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불가능하고, 단순노무직만 가능하다. 한 달 근무 시간에도 제한이 있다.

예전에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팠던 기억이 난다. 그 아이는 하반신 마비였다. 치료비로 많은 돈이 들었고, 그 달에 마침 비자를 갱신해야 했는데 돈이 부족했다. 나는 울면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고,

www.kci.go.kr

정말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180,000원을 급여 선지급 형태로 도와주었다. 덕분에 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구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의 99%의 경우 내 지원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계약 과정이 복잡하고, 취업허가를 받는 절차와 내 비자(G-1)로 일할 수 있는 곳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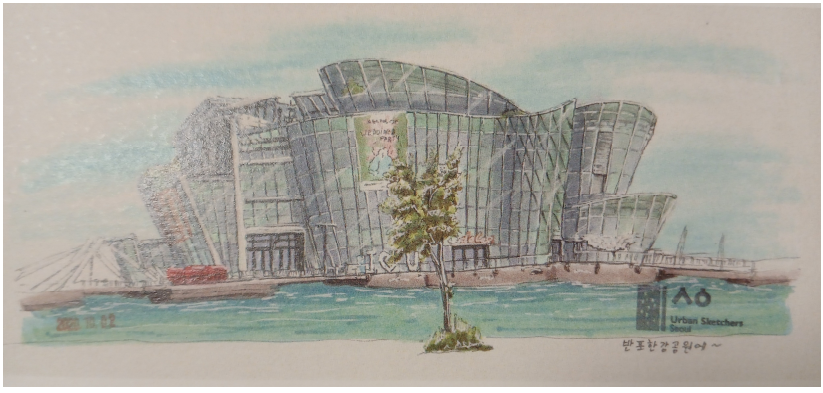

[그림 2] 나디아의 그림, 그림 제목: 반포공원, 놀다

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 직업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고 싶다. 한국에서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싶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꿈일 뿐이다[그림 2].

나는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책을 출판할 수는 없다. 아픈 고양이를 구조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림도 직접 그렸다. 여러 출판사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유는 비자로 인한 법적 문제와 이로 인해 계약 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가로서도 그림을 주문받거나 전시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나는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내 전문 분야를 통해

www.kci.go.kr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아마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부디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2) 직업 선택의 제한

나디아는 화가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고 싶지만, 인도적 체류허가 지위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것은 단순히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단순 노무 직종에만 종사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일을 구하고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구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2021: 12-15)의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기타’(G-1)은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지만 「난민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인도적 체류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준하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해당하고 장기간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인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 체류연장 수수료, 고용주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업 허가 절차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12).

자본주의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은 필수적이다. 어떠한 형태라도 돈을 벌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초적인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취업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취업 제한이 있어 본인의 장점이나 성향, 건강 상태, 언어 능력 등과 상관없이 단순노무직 내에서 직장을 찾아야 한다. 실무현장에서 활

www.kci.go.kr

동한 경험에 따르면, 결국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은 공장, 농촌, 어촌 등지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사실 그것도 신체 건강한 이들만 가능하다. 단순노무직이라는 것 자체가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인도적 체류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해도 취업 허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활동가로서 지원해보니,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허가를 위해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류 기간에 맞추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취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적 체류자 입장에서는 취업 허가비조차 부담스럽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에 온 인도적 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한다. 사회권위원회가 노동에 관한 권리(right to work)에 관하여 발표한 일반논평 제18호에 따르면, 당사국은 개인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일을 할 권리 – 나아가 부당하게 일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UN CESCR, 2006: para. 4). 이는 “개인과 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노동 선택의 자유를 통해 표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동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포용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했다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며 자신들의 삶의 근간을 만들어 갈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5. 한국 난민들의 잊혀진 목소리(가족결합권의 부재)

1) 이스마일(Ismail Mo) 이야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한국을 내 고향이라고 불렀다. 한국을 찾은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다. 나는 난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삶을 꾸려갈 꿈만을 품고 이곳에 왔다. 하지만 나는 나를 지켜보지만 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다.

처음부터 정부는 나에게 한 비자를 발급했고, 그 비자는 나를 하나의 가혹한 현실에 얽매이게 했다. 위험하고 더럽고 지치는 공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현실 말이다. 나는 극심한 더위,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유독한 먼지, 그리고 위험한 환경을 매일, 매년 견뎌왔다. 내 비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욱 지쳤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육체노동이 아니라, 내 식탁의 빈 의자다. 8년 동안 정부는 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금지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스함 없이 계절이 바뀌고, 명절이 지나가고, 생일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가족과의 모든 전화 통화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고문이 되기도 한다.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붙잡아 둘 수가 없다.

나는 건강 보험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지킨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존엄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마치 여기 있는 듯하면서도 여기 없는 듯 대우받는다. 일하고 기여할 만큼은 보이지만, 권리, 기회, 혹은 연민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말이다.

나와 같은 난민들은 사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할 권리,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살 권리 말이다. 정부의 방치

www.hrc.go.kr

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서서히 침식해 가는 것이다. 변화 없이 흘러가는 매해는 우리에게서 또 한 해를 빼앗아간다.

우리는 통계 수치나 그림자 속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라 정의(justice)이다.

2) 가족결합권의 부재

이스마일은 인도적 체류 지위의 제도적 제약, 즉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어렵고,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며 ‘위험한 환경’을 매일 견뎌왔다. 안전에 대한 희망도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도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절은 가족과 함께 할 권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인도적 체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가족결합권이다.

‘가족결합(family unity)’은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의 헌법도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1항). 그런데 현행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난민업무 지침을 통해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법무부 난민정책과, 2022: 93). 즉, 국내에 입국한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G-1-12)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를 만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은 거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증 발급 요건이 까다로운 국가 출신의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가족 초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장

www.kci.go.kr

기간의 가족 분리 상태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2024)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에 관한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보충적 보호의 취지에 따라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4년 11월,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 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5). 지난 5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에게 가족결합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CERD, 2025: para. 30(e)).

6. 존엄성 경시와 불안정한 소속(인도적 체류자 통합 정책의 부족)

1) 써니(Sunny Mirae)의 이야기[14)]

한국에서 나를 지워버린 서류: 보호받지만 소속될 수 없다

2017년 봄, 나는 표면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를 받았다. 그것은 인도적체류(G-1-6) 비자였다. 나는 그 작고 네모난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이 비자가 안전과 어쩌면 안정을 제공해 줄지도 모

14) 이 절은 써니(Sunny Mirae)의 출간 예정인 책 “Invisible but Here: What It Means to Live Without Recognition in Modern Korea”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www.kci.go.kr

른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들여다봤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나를 지워버리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2004년 한국에 왔다. 나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삶을 꾸려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중 한 아이는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는 한 가족의 일원이었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아버지 쪽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후, 법적 불확실의 상태에 빠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배우자도, 노동자도, 학생도 아니게 되었다. 내 정체성은 행정 서류의 ‘새로운 칸’에 맞춰 다시 쓰이거나, 더 축소되어야만 했다.

그 칸이 바로 G-1-6이었다.

이 비자는 다른 비자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아동보호, 의료 문제 처리, 법적 절차 진행 등 잔류해야 할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되고 있다.[15] 일종의 ‘연민’의 표현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비자는 받는 이를 깊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점이다.

G-1-6 비자 덕분에 나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속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출생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도 공식적으로 일할 수 없다. 실제 수입에 부합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나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피한다. 매년 나는 재신청해야 한다. 마치 나와 아이들이 여전히 한국에 머물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해마다 증명해야 하듯 산더미 같은 서류와 매우 개인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을 내고, 학교 모임에도 참석하며,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

15) G-1 비자는 인도적 체류자만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체류허가로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받은 이주노동자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간병을 위해 동반한 가족 등에게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회에 기여하지만, 제도는 나를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노동, 보이지 않는 삶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감정적 소모가 크다. 안정적인 지위가 없으면 미래는 늘 물음표로 남는다. 물리적으로 한국 땅에 존재하지만, 서류상 나의 삶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ADHD가 있는 막내에게는 이런 불안정이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나는 우리를 예외로 취급하는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 자신과 아이들, 두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나는 이 비자가 단순한 체류허가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였다. 그것은 말한다 “너는 머물 수는 있지만, 온전히 존재할 수는 없다.”

G-1-6를 통해서는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거의 없다.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다. 우리가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법적인 인정도 없다. 수년간, 이 비자 상태로 살아도, 아이들이 다 성장하였지만 미래에 대해 꿈꿀 수 없는 상태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는 임시적인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나 같은 수많은 사람들—한부모, 간병인, 고령의 부양가족, 장기 거주자들이 이러한 법적 침묵 속에 유예된 삶을 살고 있다.

정책이 존엄을 무시할 때

여러 면에서 G-1-6 비자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비자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성실히, 책임감 있게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제공하는가?

한국은 기술, 발전, 외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존엄성은 또 다른 필수 인프라다. 그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권리로 쌓는다. 포용 없는 보호는 진정한 보호가 아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취약성의

www.kci.go.kr

연장일 뿐이다. 이 구조가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성, 노동, 그리고 인정을 빼앗아 간다면, 그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지속되는 인권의 침해다.

소속감을 향해

올해 나는 F-5-10 영주자격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16] 하지만 높은 재정 기준과 한국어 인증 등 요구되는 것들은 한부모로서 두 아이를 키우고 특히 한 아이가 신경다양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거의 충족하기 불가능한 조건들이다. 나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인해 모든 문이 닫혔고, 성장과 자립, 전일 간병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청원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신청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 존엄, 그리고 이곳에 머물며- 고난을 견디고, 아이들을 키우고, 매일 기여하는 것이- 내가 사회의 짐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고, 내 아이들이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음을 간절히 증명하는 과정이다.

나는 한국이 시혜가 아닌, 책임감으로 인도적 체류 비자제도를 개선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보호는 반드시 포용으로 가는 경로를 동반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대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 즉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며, 우리가 고향이라 부르는 이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미래의 일부인 이웃으로 바라볼 때이다.

---

16) 앞서 ‘학업과 정주의 벽’에서 설명했듯이,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되는 G-1 비자는 임시적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요하는 영주 자격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주 자격 중 F-5-10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거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이다.

www.kci.go.kr

2) 인도적 체류자 통합 정책의 필요성

써니는 체류자격에서부터 건강과 취업, 교육과 양육, 소속감을 향해 가는 험난한 길과 존엄성 경시까지 인도적 체류지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간파하고 이것이 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지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해결을 위해 인도적 체류자를 위한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기타(G-1-6)' 비자이며, 이는 난민신청자(G-1-5)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들에게 부여되는 임시적 체류자격과 동일한 법적 틀 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체류 형태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부여되지만, 그 실질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체류만을 허용하는 관리 중심의 접근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보호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보다 체류관리 체계의 예외적 범주로 위치시킴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를 일시성과 불안정성의 틀 속에 가둬두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의 본래 취지와 명백한 괴리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인도적 체류자는 형식상 체류가 허가되었음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접근과 경제적 통합의 경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안정적 취업, 직업훈련, 사회보장제도, 가족결합권 등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 조건들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이 제한되며, 이러한 제도적 배제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정의 악순환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단기 연장 중심의 비자 체계는 인도적 체류자를 "존재는 허용하되 소속은 부정하는" 모순된 지위에 머물게 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체류자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하는 법적·

www.kci.go.kr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난민인정자에 준하도록 임시적 성격의 ‘기타(G-1) 체류자격’을 대체할 독립적·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마련하여 장기적 거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권과 가족결합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권·기초생활보장·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주와 귀화의 경로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진로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인도적 체류자를 위한 통합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7. 맺음말 – 우리는 선언한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이미 수년 동안 불안정한 체류와 배제 속에서 생존을 감내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삶을 장기적 고립과 침묵 속에 방치해왔다.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즉각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머물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는 현실을 마주한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사람이고, 인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의 인권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성명서[17]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2018년 어느 난민환영행사에서 한 인도적 체류자가 했던 발언이다.

인도적 체류 난민들은 난민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7) 2025년 8월 19일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 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인도적 체류자의 현실》”의 성명서.

www.kci.go.kr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이들의 삶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박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박탈과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처럼 불안정한 단순노동에 내몰릴까 두려워하고, 자녀는 자신의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난민들은 더 이상 '임시 체류자'가 아니다. 2025년 기준, 총 2,016명 중 1,808명인 89%가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아왔고, 583명인 30%는 10년 넘게 살아온 사실상의 정주자들이다(난민인권네트워크, 2025). 이들은 지역 주민, 노동자, 학부모, 학생으로서 한국 사회를 구성하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영원히 '임시 비자' 신분에 묶여,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주권이나 귀화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 이 모든 조치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차별적 입장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어쩌면 2,000명이 넘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삶의 고단함과 불안에 지쳐 스스로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는 하루, 아니 한순간이 소중하다.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삶은 한국 사회의 '평범함'과 멀어져 간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고, 이 사회에서 함께한 만큼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도적 체류 난민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평범함을 허가하라.

www.kci.go.kr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13.11.9.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한 정책개선.

국가인권위원회. 2015.4.30.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근거규정 마련 권고 “불수용” 공표,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610867&searchCategory=&page=53&searchType=total&searchWord=%EC%88%98%EC%9A%A9&menuLevel=3&menuNo=91

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21a. 2021년 실태조사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

국가인권위원회. 2021b. 인도적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3.2.2.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이행 촉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776&menuLevel=3&menuNo=91,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2024.8.21.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23진정0501100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25.5.26.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228&menuLevel=3&menuNo=91,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2025.8.9.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 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머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삶, 인도적 체류자의 현실》: https://nancen.org/416343,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박노해. 2022.『너의 하늘을 보아』. 서울: 느린걸음.

법무부 난민정책과. 2022.9. 난민업무 지침: https://nancen.org/2311,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법무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 검색일자: 2025년

www.kci.go.kr

11월 1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8월호
보건복지부. 2018.6.7.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45054&cg_code=,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서울신문. 2023.11.29. [사설] 아시아 첫 다문화국가 한국의 과제: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3/11/29/20231129027005,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유엔난민기구. 2025. 유엔난민기구 실태조사 보고서: 국내 난민 아동·청소년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과 전망.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10.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4.11.1. 기준).
CERD(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25.5.9. CERC/C/KOR/CO/20-22 Con observations on the twentieth to twenty-second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dir/list?id=21&c1=3:%EC%9C%A0%EC%97%94%EC%A1%B0%EC%95%BD%EA%B8%B0%EA%B5%AC&c2=31:%EC%9D%B8%EC%A2%85%EC%B0%A8%EB%B3%84%EC%B2%A0%ED%8F%90%EC%9C%84%EC%9B%90%ED%9A%8C,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McAdam, Jane. 2007. Complementa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Refuge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UN CESCR(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9, December 8).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Art. 13 of the Covenant) (E/C.12/1999/10).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CESCR(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6, February 6).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Art. 6 of the Covenant) (E/C.12/GC/18).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6, December

www.kci.go.kr

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2: Claims for refugee status related to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under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16/12). UNHCR.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25.3.22. [Statement] As new school year starts in Afghanistan, almost 400,000 more girls deprived of their right to education, bringing total to 2.2 million: https://www.unicef.org/rosa/press-releases/new-school-year-starts-afghanistan-almost-400000-more-girls-deprived-their-right,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25.10.12. [Joint Press Release] Afghanistan’s Education System Facing Deepening Crisis for Both Girls and Boys, Warn UNICEF and UNESCO: https://www.unesco.org/en/articles/afghanistans-education-system-facing-deepening-crisis-both-girls-and-boys-warn-unicef-and-unesco,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난민법,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03호, 2025. 11.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 5. 27.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85038 판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 (1966. https://www.ohchr.org.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1951. https://www.unhcr.org.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유엔). 1967. https://www.unhcr.org.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 1989. https://www.ohchr.org.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1984, November 22. Cartagena,

www.kci.go.kr

Colombia.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ec.html.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https://www.unhcr.org.

www.kci.go.kr